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21

발의연월일: 2022. 8. 25.

발 의 자:전용기·백혜련·신정훈

고용진 • 홍성국 • 노웅래

한병도 · 정성호 · 서삼석

이원욱 • 안규백 • 최혜영

조정식 • 최기상 • 신영대

김수흥 · 김남국 · 박영순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공항,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 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(AED)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
한편, 우리나라의 급성 심장정지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4 4.3명에서 2020년 인구 10만 명당 61.6명으로 고령화와 심뇌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자 증가, 정신적·육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정지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.

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인데, 응급처치가 1분 지연될때마다 7~10%씩 사망률이 증가하고 5~10분이 경과하면 소생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반면,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

률은 하지 않았을 때보다 4배까지 증가함.

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는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 심정지 사태에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어, 심정지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와 관광 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

7의2. 제7호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광 안 내표지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	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
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	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・점유	
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	
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	
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	
다.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
	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
	관광단지 출입구
<u>&lt;신 설&gt;</u>	<u>7의2. 제7호의 관광지 및 관광</u>
	단지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
	관광 안내표지판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